

지정번호 제 호

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

1. 기관 또는 단체명:
2. 대 표 자:
3. 소 재 지:
4. 교육훈련 내용:

「재난안전산업 진흥법」 제1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
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
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행정안전부장관
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시장 · 도지사 ·
특별자치도지사
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